

제 24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 
제1차 본회의 2018. 08. 27(월) 10:00

고령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(안)

# 검 토 보 고 서



전 문 위 원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 안 자 : 고령군수

## 2. 제안이유

- 고령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, 고령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지원대상 규정(안 제3조)
-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 (안 제4조)
- 북한이탈주민 지원위한 지역협의체 설치 (안 제5조~제11조)
-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항(안 제12조)

## 4. 관계법령

-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
-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및 제49조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고령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, 고령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  -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
  -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, 안 제4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시책 및 범위를 규정하였으며,
  -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협의회 설치·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.
  
- 내용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
  - 본 조례안은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」의 상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「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」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됨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# 관계법령 발췌

## [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]

제22조(거주지 보호)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·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.

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3. 8. 1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③~④<생략>

제3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 3. 26.]

제42조의2(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·운영)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(이하 "지역협의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,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과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종교단체·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.

③ 지역협의회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. [전문개정 2010. 9. 27.]

제49조(권한의 위임)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

다음 각 호의 거주지 보호 업무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14. 2. 11.>

1. 제4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·관리에 관한 사항
2. 제42조의2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사항
3.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·자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 지원에 관한 사항
4.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거주지에서의 자립·정착에 관련된 사항

② <생략>

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한다. <개정 2014. 2. 11., 2014. 4. 21.>

1. ~6. <생략>
7. 북한이탈주민단체의 정착지원활동 지원사업
8. ~9. <생략>

④ <생략>